



[문의] 진명구 비서관 (02-784-6271)

국회 의원회관 518호

3.8. 세계 여성의 날, 국가 책무로서 성평등 사회 실현 위한 <성평등 공약>을 제안하다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 발표

-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해야
-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돌봄사회 실현해야
-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평등 관점의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장되어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가 책무로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공약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2017년 오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성격차는 최하위 수준(세계경제포럼 성격차 보고서 144개국 중 116위),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 지난해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섬마을 성폭력 사건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 여성 비율은 계속 증가, 독박육아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공무원 워킹맘의 과로사가 발생하는 성불평등한 사회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일하고 돌보며, 성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국가 책무를 강조하였다.

이에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비전으로 △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돌봄사회 실현, △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평등 관점의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장과 세부전략을 제안하였다.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

비전 1.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①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 ②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 여성비율 OECD 평균> 추진
- ③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 및 국가 목표 명시 위한 <성평등 개헌> 추진

비전 2. 일, 쉼,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한 돌봄사회 실현

- ①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 ②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여성의 전문성 강화!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 구축
- ③ 쉼 있는 가족 돌봄 위한 <가족돌봄휴직기간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 ④ 남성과 여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 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사회기본법」 제정

비전 3.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평등 관점의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 ① 여성인권보호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 ② 일상적 여성폭력 및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책임 폭력안전망 강화>
- ③ 아동·청소년 인권강화를 위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안철수 전 대표는 “국가의 책무로서 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 리더가 성평등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때 분명 조금 더 나은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며, “오늘 발표한 성평등 공약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8일

국민의당 안 철 수

<붙임 1>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 주요 내용

<붙임 1>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 주요 내용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

비전 1.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1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 성평등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로서 위상기능강화
 -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 강화
 - 위원장은 대통령이 수행하고, 부위원장을 성평등인권부장관이 담당하여 성평등 정책 현실화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흩어져 있는 보육, 돌봄서비스 등 돌봄 관련 사업체계를 재정비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개선
- 성평등 인권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발달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성평등인권부」로 통합**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 여성비율 OECD 평균> 추진

3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 및 국가 목표 명시 위한 <성평등 개헌> 추진

-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

비전 2. 일, 삶,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한 돌봄사회 실현

1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임금 정보 공개 의무화
 -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용 사업장 의무화
 - 불성실 공시(공시불이행, 허위공시, 공시변경) 시 시정 권고
 - 성별로 구분된 고용형태/임금 공시: ① 임원임금 현황, ② 전 직원 월평균급여(기본급, 성과급), ③ 임금분위별 분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하여 공시된 임금정보 기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현황 발표**

2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여성의 전문성 강화!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 구축

- 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지원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청년-여성-디지털 인재 플랫폼>으로 개편
 - 경력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중심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한 **20-30세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강화**
 - 경력단절여성의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로의 재진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강화**
-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 일자리**로의 취업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신기술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고령화에 대비한 **50-70세대의 2모작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상시화
 - 중장년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연계를 위한 훈련 체계 강화

③ **쉽 있는 가족 돌봄 위한 <가족돌봄휴직기간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와 가족돌봄지원 위한 <가족돌봄휴직기간 확대>**

- 가족돌봄휴직 현행 1년 90일(3개월) 한도 → 1년 180일(6개월)로 확대

○ **쉽 없는 가족돌봄,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 가족돌봄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 돌봄공간에서 벗어나 휴식, 재충전 위한 휴식서비스 제공
- 현행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장애아도우미 지원, 아동 1명 당 연 480시간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및 치매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이내 휴가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급) 확대

· (영국) 1995년 돌봄자지원법(Carer's Act) 제정, 2004년 돌봄자기회보장법(Carer's Equal Opportunities Act 2004, 돌봄자의 직업, 교육, 여가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지원서비스 제공) 제정, 2007년 돌봄자 뉴딜정책(New Deal for Carers 2007, 돌봄수행 시 주간돌봄서비스, 휴식서비스, 원격돌봄과 건강서비스 등 제공, 휴식서비스 바우처 지급)

· (미국) 2000년 돌봄가족지원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2000) 도입: 비공식 돌봄자의 가족 내 노인, 아동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돌봄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족돌봄자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

- 가족돌봄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 규정 신설
- 가족돌봄자의 교육, 여가, 직업 등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권리 보장
- 가족돌봄자 교육, 상담, 건강지원 프로그램 개발

④ **남성과 여성 모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 100% 확보(상한액 100만원 → 200만원)**

- 부모 모두 초기 소득대체를 확대를 통해 전체 육아휴직 사용 및 남성(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동시 확대
- (한부모가족 특별 규정 신설) 한부모의 경우 양육에의 경제적 어려움 등 양부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 소득대체 100% 확보
- 중후기 9개월 소득대체율 현행 40%에서 60%로 상향(상한액 150만원 상향)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복귀 후 6개월 근무 후 25% 지급) 제도 폐지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5일(3일 유급) → 3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후 6개월 이내 총 30일의 휴가를 사용 하되, 최소 월 5일 이상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분할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일을 지원하는 법안 추진

○ **눈치보지 않고 불이익 없는 육아휴직 보장**

- 일가정 양립 제도 관리감독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 현행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 해고금지 신설

○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로 모성보호의 국가책임강화**

- 모성보호지원급여(육아휴직급여 포함) 고용보험기금에의 국고부담(일반회계) 50% 확보

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사회기본법」 제정**

○ **중장기 5개년 국가돌봄사회기본계획 수립과 돌봄노동실태조사 실시**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국가 책무 규정 신설**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경력인정제 마련**

- 돌봄노동자(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직종별 임금체계 표준화 지침 마련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돌봄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 통한 돌봄노동자 안전고용 보장
- 돌봄대상자와 돌봄자의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공급 등 돌봄네트워크 구축
- 돌봄서비스 국가표준 및 서비스 평가 기준 마련

○ **돌봄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위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상 가사사용자 포함(적용제외 규정 삭제)**

비전 3.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평등 관점의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① 여성인권보호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30% 확대, 일반회계로 편성
-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의 여성 폭력 피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 지원
 - 경력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
 - 연장근로, 야간수당 지급
 -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가 수반되어야 함.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비용 대폭 확대
 - 폭력 피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등에 대한 지원 현실화
 - 지원금 제한 폐지로 피해자에 맞춤형 지원서비스
 - 피해자 중복지원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현실화
 - 피해자의 생활시설 입소 거부에 맞춘 탈시설 지원서비스 확대
 - 생활시설 인력증원으로 교대근무 현실화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간 마련 지원
 - 장애인 폭력 피해자 시설 확대
 - 피해자 지원시설의 통폐합, 지역적 재배치, 새로운 운영방식 등이 전제되어야 함.

② 일상적 여성폭력 및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책임 폭력안전망 강화>

- 통합적 관점의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기본법 마련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법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 제정
-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마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 및 위상 강화를 통한 여성폭력방지 통합 지원 전달체계 개편
 - 폭력예방교육 본부, 폭력지원센터(기존 1366 지원센터, 해바라기 지원센터, 통합상담소 지원센터 등) 지원 본부, 여성인권 인식개선 위한 온라인폭력예방사업 및 폭력예방 홍보팀 신설

- 심각한 디지털성폭력 문제의 적극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위한 <디지털 성범죄 아웃법> 마련
 - 몰래카메라 촬영죄 처벌 강화, 원치 않는 사진 영상 유출 행위 처벌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 일상의 안전을 깨는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법> 제정

③ 아동·청소년 인권강화를 위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 성평등-인권 통합교육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의 교육혁명의 기본토대로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 성평등-인권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교사 재교육 전면 실시
- 성평등-인권 통합교육 의무 시행을 「성평등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및 각 시도교육청별 「성평등인권 교육조례」 마련